

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]

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마크(제6조제1항 관련)



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
(사업자명)
(서비스 분야)

비고

1. 인증마크에는 인증마크, 인증명칭, 사업자명 및 서비스 분야를 표시한다.
2. 서비스 분야는 기획, 개발, 임대, 관리, 중개, 평가, 자금조달, 자문, 정보제공 또는 기타 중에서 하나를 기재한다.
3. 인증마크의 색상 값은 아래를 참조한다.

 C_0 M_60 Y_100 K_0 R_245 G_130 B_32	 C_0 M_40 Y_100 K_0 R_250 G_166 B_26	 C_0 M_100 Y_100 K_0 R_237 G_28 B_36
 C_0 M_100 Y_0 K_0 R_236 G_0 B_140	 C_20 M_100 Y_0 K_0 R_198 G_22 B_141	 C_50 M_40 Y_100 K_0 R_147 G_141 B_60
 C_50 M_0 Y_100 K_0 R_141 G_198 B_63	 C_70 M_0 Y_100 K_0 R_80 G_184 B_72	 C_85 M_10 Y_100 K_0 R_0 G_148 B_68
 C_70 M_10 Y_0 K_0 R_20 G_177 B_231	 C_70 M_20 Y_0 K_0 R_51 G_163 B_220	 C_85 M_50 Y_0 K_0 R_27 G_117 B_188
 C_100 M_60 Y_0 K_0 R_0 G_102 B_179	 C_100 M_95 Y_5 K_0 R_43 G_57 B_144	
 C_100 M_100 Y_100 K_100 R_0 G_0 B_0	 C_0 M_0 Y_0 K_80 R_51 G_51 B_51	

4. 그 밖에 인증마크의 규격 및 글씨체 등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.